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20. 04. 00.
개정 2021. 09. 25.
개정 2022. 09. 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이피엠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등 (이하 “관련법규”)에 나온 사항,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 및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구분)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나.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

3. 투자자문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가.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다.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라. 성과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마.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선취 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부과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④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산의 규모 및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투자제안서 포함)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77조 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여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4.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2〉의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④ 투자자문수수료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 방법, 수수료 계산 기간 및 수수료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문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및 보수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년 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 >

투자자문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 원

3. 투자자문수수료
□ 기본수수료: 투자자문재산 원본의 연 %(부가세포함) : 원
□ 성과수수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2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자문담당자 :

6. 거래증권회사 계좌
□ 거래증권회사명 :
□ 계좌번호(계좌명) :
□ 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
□ 주문담당자 E-Mail :

7.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 주 소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8. 기타사항
□ 연체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별지2 〉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

1) 수수료 체계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른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성과보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투자자문수수료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은 회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문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2) 수수료의 납입 및 계산기간 등

①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는 연1회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투자자문 성과보수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과되는 전체 수수료체계는 아래와 같다(성과보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라 부과한다).

수수료 부과 기준표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지급 구분
투자자문계약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 연1.0%	선취
	성과보수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

① 성과보수의 지급 :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의 20% 이내로 한다.

② 높은 투자위험 노출 :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③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을 초과하더라도 부의 수익률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성과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시에는 종합주가지수(KOSPI) 수익률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